



2016년 칠량면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6. 9. 21.(수)~9. 23.(금) / 3일간
- 대상기간 : 2014. 10. 1.~2016. 8. 31. / 2년간
- 지적사항 : 15건
 - 시정 6건, 주의 9건
 - 재정상 조치금액 : 809천 원(회수 673, 부과 136)



칠량면 종합감사 결과

I 총 평

1. 일반행정 분야

가.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프로젝트 적극 추진

- 칠량면은 고려청자박물관, 청자축제장, 가우도 출렁다리, 놀토수산물시장 등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에 관람객의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유지로 4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이 잘되었음.

나. 육묘장 설치·운영으로 특색 있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

- 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해 132㎡의 육묘장 설치·운영으로 자체 꽃 육묘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및 주요 상가등에 제공은 물론 유희지에 신규 소공원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함.

2. 외계분야

- 일부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 미흡 등으로 기본적인 업무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농업·회계 분야에서 선례답습적인 업무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3. 주민복지 분야

가. 마을 경로당 방문 건강강좌 실시

- 주 1~2회 마을을 순방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면장이 직접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보살피는 등 최선을 다함.

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무료강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노인들의 여가활동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성별 및 연령에 많은 제한으로 노인 모두가 참여하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국한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남·녀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무료 자원봉사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어, 초보자도 비용 부담 없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4. 건설분야

- 최근 경북 경주시 지역에 지진으로 뜻하지 않은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등의 발생빈도가 증가되는 상황으로 평상시 철저한 사전대비와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가 필요한데도 응급복구용 자재 관리에 소홀히 함.

5. 농업분야

- 매년 가을철부터 실시되는 산불방지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하여 순찰·홍보·계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농지형질변경(전용)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상황이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정리하여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음.

II 감사 결과

1. 처분요구 실적 : 15건

○ 행정상 조치 : 시정 6건, 주의 9건

○ 재정상 조치 : 809천 원(회수 673, 부과 136)

2. 지적사항 목록

(단위 : 건, 천원)

연번	분야	건 명	행정상 조치 (건)		재정상 조치 (천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부과	
계		15건	6	9	809	673	136	
1	회계분야	공사계약에 따른 인지세 미 징구	○		100		100	
2	“	격려금 지급 전달자 영수증 미 징구		○				
3	“	이장수당 집행 부적정		○				
4	“	세출예산집행 과목 적용 부적정		○				
5	일반행정	쓰레기 봉투 판매 부적정		○				
6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7	“	수입증지 수수료 입금지연 불입		○				
8	“	농지전용신고 면허세 미 부과	○		36		36	
9	건설분야	재해응급복구용 자재관리 및 재난예방활동 소홀		○				
10	“	칠량면 ○○마을 컴퓨터조성공사 추진 소홀	○		673	673		
11	농업분야	농지형질변경(전용)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12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13	“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소홀	○					
14	사회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15	“	폭염기간 경로당 냉방기 이용 홍보 소홀		○				

VI 지적사항 요약

1. 공사계약에 따른 인지세 미 징구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의 규정¹⁾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어야 하나, '16년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칠량면 ○○마을 진입로 주변정비사업의 4건의 공사등을 실시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한 과세문서를 확인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2. 격려금 지급 전달자 영수증 미 징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의 규정²⁾과 관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 원을 초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4년 10월 1일 2건³⁾을 지출하면서 1건당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종 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날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이장수당 집행 부적정

-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제3항에 따르면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4년 10월 17일에 이장수당을 이장단 총무에게 일괄 지급하였으며, '14년 11월 22일 1건은 보수지급일을 2일 경과 후 지급하면서 집행품의서도 첨부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1)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는 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인지세 2만 원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며,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날인이나 서명으로 소인(국세청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증빙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2014.10.1.(여성농민 한글학교 가을운동 격려 10만 원), 2014.10.1.(신암마을 이장 병문안 실시 10만 원) 지출

4. 세출예산집행 과목 적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준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수용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14년 10월부터 '15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민원인의 접대 명목으로 차 및 음료등을 구입하면서 예산지출에 소홀히 함.

5. 쓰레기봉투 판매 부적정

- 「강진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쓰레기봉투의 판매·관리 등)제1항의 규정4)과 동조례 제15조(출납정리) 및 제17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정리하여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함에도 매수청구서 없이 판매 하였고, 기초수급권자 등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음에도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을 추진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부적정

- 「강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운영)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위원회 심의 및 운영결과 보고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 위원장 명의 미 이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업무를 소홀히 함.

4)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으려 할 때에는 각 읍면장에게 별지 제6호에 따른 매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7. 수입증지 수수료 입금지연 불입

-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6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5건 (98,500원)의 수입증지수수료 수입금을 지연 불입하였음.

8. 농지전용신고 면허세 미 부과

-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동법 및 동조와 동항 제2호의 규정은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라 규정하고 있다. 라는 규정에도
- '14년10월부터 '15년 10월까지 칠량면에 거주하는 4명은 동법 시행령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제4호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에 해당 되어 면허세 부과대상이나 칠량면에서는 ○○길 65 최○○ 외 3인에 대하여 면허세 36천 원을 부과하지 않음.

9. 재해응급복구 자재관리 등 재난 사전예방 활동 소홀

- 재해응급 복구용 자재 및 장비 등은 내구연한 및 보관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불량 자재 폐기, 부족자재 확보를 위한 사용가능 여부 및 보유량 확인, 부패 예방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평소 노후(위험) 주택, 붕괴우려 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기타 위험시설물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종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 예방활동과 위험 요인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칠량면에서는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현황판 미정비 등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2016년 각종 기상특보 발효시 재난예방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자연 재난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함.

10. 칠량면 ○○마을 쉼터조성공사 추진 소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현장과 부합되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지방규정에 의하여 건설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에 의하여 현지와 부합되도록 시공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하여야 함.
- 칠량면에서는 ○○마을 쉼터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시 철근량이 2.7톤이나 철근가공 및 조립을 3.6톤으로 과다계상 하는 등 설계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으며, 사업량 변경(설계 변경)등의 절차 없이 준공하여 사업비 673천 원을 과다 집행함.

11. 농지형질변경(전용)에 따른 농지원부 변동정리 소홀

- 농업용 창고·농가주택 시설로 농지전용(형질변경) 신고에 따른 농지이용 상황을 현지 확인 후 변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함에도 '16년 9월 23현재까지 5건의 토지소유자의 농지원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어, 농지원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2.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 및 농림사업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9조 규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물에 대해 5년간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대장을 만들어 연 2회 이상 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5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건 사업이 완료 되었음에도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고 매년 군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보고로 갈음하는 등 효율적인 보조지원 사업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13.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 소홀

- '14년 2월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던 토양개량제는 농가에 보급하여 농작물이 식재되기 전에 모두 살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14년 2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마을에 공급한 토양개량제 310포대가 장흥군 관산읍을 넘어가는 주요 도로변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등 토양개량제 살포 지도를 소홀히 함.

14.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2013.12.9.제정) 제6조(신청방법) 제1항에 의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신청서의 구비서류중 1. 사망자 주민등록초본,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칠량면에서는 '14년부터 '16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총 21건의 신청을 받아 접수하면서 5건에 대해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부적정 처리한 사실이 있음.

15. 폭염기간 경로당 냉방기 이용 홍보 소홀

- '16년 8월 22일 「폭염기간 경로당 냉방기 이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강진군에서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하나, 칠량면에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함.